

의안번호	2126503
의 퇴 인	송갑석의원
회 답 일	2024. 4. 3.
추 계 번호	24D0150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메가시티의 형성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위원회·소위원회·자문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억 8,9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4억 9,500만원(연평균 2억 9,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위원회·소위원회·자문위원회· 위원회 사무처 설치 운영 (안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및 제21조)	289	294	299	304	309	1,495	299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조직)	-메가시티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메가시티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됨	의무규정
2	안 제13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재량규정

1) 제47조(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59조(법인세 등 조세의 감면), 제60조(부담금 등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부담금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에 포함하지 않음

3	안 제17조(자문위원회)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21조(위원회 사무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	의무규정
5	안 제22조(메가시티의 설립) 및 제23조(메가시티 의회)	-메가시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함(제22조)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이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 2.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메가시티의 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약 또는 규약(이하 “협약등”이라 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함(제23조)	의무규정
6	안 제24조(메가시티 사무의 소관 및 행정기구)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의 의회에서 선출하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메가시티단체장을 겸할 수 있음 -메가시티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초광역공무원을 둔 -초광역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의무규정
		-메가시티는 협약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메가시티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25조(메가시티 사무처리의 기본계획)	-메가시티의 사무는 메가시티단체장의 소관업무로 하며, 메가시티단체장은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메가시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34조(기본계획의 수립)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등을 포함한 메가시티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3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35조(개발계획의 수립), 안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제42조(준공검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메가시티건설사업(메가시티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함.이하 같음)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건설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메가시티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메가시티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는 메가시티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메가시티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47조(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제 50조(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외국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메가시티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게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메가시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중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메가시티단체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학, 외국교육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교사,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53조(메가시티 경제활성화계획) 및 제54조(메가시티산업 및 메가시티협력사업의 승인)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에 특화된 초광역권산업 또는 초광역권협력사업, 도농격차 해소시책 등을 포함한 메가시티 경제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지방시대위원회는 메가시티단체장이 메가시티산업 또는 메가시티협력사업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이 완료된 경우 국가는 해당 메가시티산업 또는 메가시티협력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60조(지방 공기업의 설립)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 사무를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62조(메가시티 사무 추진을 위한 연구 및 데이터 수집)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 사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며, 그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함	의무규정
14	안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운용)~제 69조(잉여금의 처리)	-메가시티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메가시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함 -메가시티 특별회계의 세입은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의 매각대금 등의 수익금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임	의무규정
15	안 제72조(메가시티 발전기금 설치)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의 발전 및 사무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메가시티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조직)	○	—
2	안 제13조(소위원회)	○	—
3	안 제17조(자문위원회)	○	—
4	안 제21조(위원회 사무처)	○	—
5	안 제22조(메가시티의 설립) 및 제23조(메가시티 의회)	—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존에도 가능함 (「지방자치법」 제199조 ²⁾ 및 제204조 ³⁾ 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를 둠)
6	안 제24조(메가시티 사무의 소관 및 행정기구)	—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존에도 가능함 (「지방자치법」 제205조 ⁴⁾ 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 선출하고, 집행기관의 직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함)
7	안 제25조(메가시티 사무처리의 기본계획)	—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존에도 가능함 (「지방자치법」 제203조 ⁵⁾ 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8	안 제34조(기본계획의 수립)	×	법 시행 이후 설립될 메가시티의 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메가시티별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정 곤란
9	안 제3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35조(개발계획의 수립), 안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제42조(준공검사)	×	메가시티건설사업의 종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메가시티건설사업 및 기반시설·부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정 곤란

2)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안 제47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제50조(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위치·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메가시티단체장의 지식산업센터 설립비용 지원 규모, 국가의 메가시티 입주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추정 곤란
11	안 제53조(메가시티 경제활성화계획) 및 제54조(메가시티산업 및 메가시티협력사업의 승인)	×	지방시대위원회가 승인할 각 메가시티별 메가시티산업·메가시티협력사업의 종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가의 메가시티산업·메가시티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2	안 제60조(지방공기업의 설립)	×	메가시티단체장이 설립할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수, 종류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설립할 지방직영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를 추정 곤란
13	안 제62조(메가시티 사무 추진을 위한 연구 및 데이터 수집)	×	메가시티별 메가시티 관련 데이터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데이터의 수집·분석비용을 추정 곤란
14	안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운영)~제69조(잉여금의 처리)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메가시티 특별회계로의 전입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5	안 제72조(메가시티 발전기금 설치)	×	메가시티발전기금의 재원, 용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메가시티발전기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모를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8조에 따라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총 40명이며, 이 중 20명이 위촉위원⁶⁾이라고 가정

②~⑥ (생략)

3) 「지방자치법」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생략)

4) 「지방자치법」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5) 「지방자치법」 제203조(기본계획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③ (생략)

6) 제정안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수는 메가시티단체장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수에 따라 달라짐. 본 추계에서는 국무총리·기재부장관 등 11명의 정부측 위원 외 당연직 위원인 메가

-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회의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수당을 지급하며, 연 4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
- 안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소위원회 2개가 설치되고, 각 소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4명이 위촉위원인 것으로 가정
 - 각 소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회의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수당을 지급하며, 연 4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
- 안 제17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10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60명이 위촉위원인 것으로 가정
 - 정책자문위원회의 규모가 크므로, 각 분야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⁷⁾로 나누어 회의하며, 각 분과위원회마다 15명의 위촉위원을 둔다고 가정
 - 위촉위원에 대한 자문수당은 회의당 25만원을 지급하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연 2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
- 안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국무조정실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운영예산을 준용함
 -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은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24년 운영비로 2억 2,600만원⁸⁾이 편성되었음
-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추계기간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⁹⁾를 적용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

시티단체장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수가 9명이라 가정한 것임

7)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② (생략)

③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생략)

8) 행정실무원 임금, 직책수행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9)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3년 3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7	2.4	2.1	2.0	2.0	2.0

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8조 및 제10조)

- 안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억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명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

[표 2]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8조 및 제10조)	20	20	20	20	20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3조)

- 안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2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위촉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0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소위원회마다 4명의 위촉위원을 두고,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

[표 3]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3조)	8	8	8	8	8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7조)

- 안 제17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별로 15명의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회비를 지급한다고 가정
 - 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고 가정

[표 4]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7조)	30	30	30	30	30	1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위원회 사무처의 설치·운영(안 제21조)

- 안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사무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억 3,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2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4년 운영예산(2억 2,60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표 5] 위원회 사무처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위원회 사무처의 설치·운영(안 제21조)	231	236	241	246	251	1,2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메가시티의 형성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위원회·소위원회·자문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억 8,9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
까지 5년 동안 총 14억 9,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8조 및 제10조)	20	20	20	20	20	100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3조)	8	8	8	8	8	40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7조)	30	30	30	30	30	150
위원회 사무처의 설치·운영(안 제21조)	231	236	241	246	251	1,205
합 계	289	294	299	304	309	1,4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nabo.go.kr